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높은 위험]**

GS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GS튼튼배당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GS튼튼배당증권투자신탁1호(주식)**를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GS튼튼배당증권투자신탁1호(주식) (AD051)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GS자산운용 (주) (02-6910-1100)
4.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www.gsasset.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3년 9월 22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년 10월 1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총액 :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6910-1100/ www.gsasset.co.kr), 각 판매회사 및 협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5. 운용전문인력
6. 투자실적추이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 절차 및 방법

III.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90%+Call금리*10%

주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기구,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내역 |
|---|--------------------------------------|-----------|
| ① | GS배당증권 모투자신탁 1호(주식) | 80% 이상 |
| ② |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③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의 예치 | 10% 이하 |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한다) - 금융기관예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 |

※ 위의 투자대상은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제한 등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 모자형 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8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장기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90%+Call금리*10%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 모투자신탁 명칭 | 주요 투자전략 | 투자비중 |
|-----------------------|--|--------|
| GS배당증권모 투자신탁1호(주식) | 1. 배당주 전략 - 안정적인 배당 가능 기업, 현금사정이 여유롭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을 선정 - 지속적인 배당지급 가능여부와 향후 배당 확대 가능성에 초점 - 안정적인 수익창출 능력(ROE:자기자본이익률)과 기업의 안정성(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을 감안 2. 가치주 전략 | 80% 이상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서 주목 받지 못해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 발굴 - 과도한 시장 반응으로 인해 시장가치가 본질가치대비 저평가 상황에 초점 - PBR(주가순자산비율)로 단순히 평가하기 보다 ROE(자기자본 이익률)를 감안한 PBR을 고려 <p>3. +α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cle(주기)를 가지고 있는 산업 중 turnaround(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산업과 종목 선정 - 특정시점의 변곡점 분석을 통해 시장상황에 대응 <p>* 비교지수 : KOSPI*90%+Call금리*10%</p> | |
|--|--|--|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방안

- ① 시장위험
 - 빈번한 자산 배분 지양 및 파생상품 활용으로 불필요한 거래 비용 축소
- ② 변동성위험
 - 일정 수준 이상의 변동성에 노출될 경우 포트폴리오 집중 점검
 - 변동성 원인 분석 후 대응 방안 실행
- ③ 개별기업위험
 - 철저한 기업분석과 투자종목의 주기적 기업 탐방
- ④ 유동성 위험
 - 투자종목 선정시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고려
- ⑤ 신용위험
 - 투자종목 선정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이 낮은 종목 투자 배제

※ 상기 제시된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모투자신탁에 관한 위험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구분 | 투자위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금리변동 위험 |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선물·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주식운용전략으로 인한 위험 | 주식 투자시 상대적으로 배당수익률(주당 배당 금액을 주가로 나눈 비율)이 높은 종목과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투자하므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거래상대방 위험 |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위험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투자위험이 가장 높은 경우를 1등급으로 하여 가장 낮은위험도를 나타내는 5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다른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국내 주식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전체포트폴리오 중 이러한 유형의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의 적정 비율을 선택함이 바람직합니다.

※ 이 위험등급분류는 GS 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3.09.22현재)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 다른 운용자산 규모 | |
| 임현근 | 1971 | 책임운용 (주식운용 팀장) | 31개 | 2,294억 | - 전남대학교 회계학 학사 - 우리투자증권 WRAP 운용[주식운용] (10년 3개월) - GS 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2008.08~현재) |
| 정현욱 | 1977 | 부책임 운용 | 0개 | 0억 | - 한양대학교 사회학 학사 - 고려대학교 Finance -MBA - GS 자산운용 주식운용(2008.7 ~ 현재)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임현근운용역: 1개, 3억/정현욱운용역: 0개, 0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당사의 펀드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해당사항 없음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분 (Class) | 가입자격 |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 |
|---------------|---|----------------|---|
| | | 선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부과기준 | - | 납입시 | 환매시 |
| A1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 이내 |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
| A-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4% 이내 | |
| C1 | 가입제한 없음 | - | |
| C2 | Class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 | |
| C3 | Class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 | |
| C4 | Class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 | |
| C-e |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 - | |
| C-i |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 | |
| C-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 | - | |
| C-w | 일임형 Wrap 전용 | - | |
| C-P |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

주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취판매수수료 차등 적용의 관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gsasset.co.kr)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지급비율 (연간, 순자산총액의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신탁업자 | 일반 사무관리 | 기타비용 | 총보수 및 비용 | 증권거래비용 |
| 지급시기 | 매 3개월 | | | |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시 |
| A1 | 0.50 | 0.70 | 0.03 | 0.02 | 0.05 | 1.30 | 0.10 |
| A-e | | 0.30 | | | 0.05 | 0.90 | 0.10 |

| | | | | |
|-----|------|------|------|------|
| C1 | 1.50 | 0.05 | 2.10 | 0.10 |
| C2 | 1.00 | 0.05 | 1.60 | 0.10 |
| C3 | 0.80 | 0.05 | 1.40 | 0.10 |
| C4 | 0.70 | 0.05 | 1.30 | 0.10 |
| C-e | 0.40 | 0.05 | 1.00 | 0.10 |
| C-i | 0.05 | 0.05 | 0.65 | 0.10 |
| C-f | 0.03 | 0.05 | 0.63 | 0.10 |
| C-w | 0.00 | 0.05 | 0.60 | 0.10 |
| C-P | 0.90 | 0.05 | 1.50 | 0.10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4)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5)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을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합산한 총 보수 · 비용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6)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비용을 제외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7) 이 투자신탁은 최초로 설정되는 펀드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기타비용 등은 당사에서 운용중인 타 투자신탁의 추정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운용시 실제 발생하는 기타비용 등은 상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 구분 | 1 년후 | 3 년후 | 5 년후 | 10 년후 |
|----------------------------------|------|------|------|-------|
| Class A1 | 231 | 507 | 804 | 1,645 |
| Class A-e | 131 | 326 | 536 | 1,143 |
| Class C1 (CDSC Class) | 215 | 536 | 835 | 1,683 |
| Class C-e | 102 | 319 | 554 | 1,229 |
| Class C-i | 66 | 208 | 363 | 812 |
| Class C-f | 64 | 202 | 352 | 788 |
| Class C-w | 61 | 192 | 335 | 751 |
| Class C-P | 153 | 477 | 823 | 1,800 |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 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1 : 1.0%, Class A-e : 0.4% 가정)

2. 과 세

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은 거주자 개인15.4%(주민세 포함), 내국 일반법인 14%로 과세 됩니다.

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가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 수령요건 |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 소득공제 |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
|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
| 분리과세한도 |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
| 연금외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
| 해지가산세 | 없음 |
|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계좌 승계 |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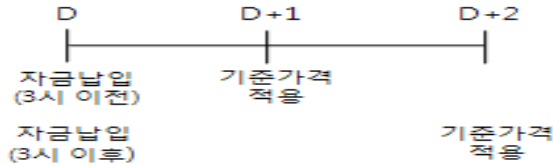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시장소 |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gsasset.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1)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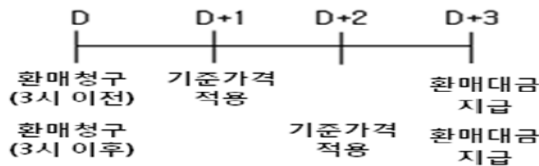
-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2) 환매

-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 영업일(D+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 **집합투자규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매입·환매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환 절차 및 방법

-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2) (1)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3) (1)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 (4) 집합투자규약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1. (1)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 하는 경우
 -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 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Ⅲ 요약 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음

